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39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김기웅 · 엄태영 · 김소희

김상훈 · 임종득 · 신동욱

권영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 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	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	②
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	
법」에 따라 교환・분합하는	
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・	
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	
득세를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8년 12월 31일</u>
면제한다. 다만, 한국농어촌공	
사가 교환・분합하는 경우에는	
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.	,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